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8. 26(수), 14:00 ~

■ 장 소: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	의사항】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심해 해양공학 수조동· 연구동 신축	공개			
2	「하늘다람쥐」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포획	공개			
3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토왕성폭포 전망대 및 탐방로 설치	공개			
4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공개			
5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공개			
6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7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문화재정보센터 건립	공개			
【검토					
8	「정선 용소동굴」공개 제한	공개			
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문화재구역 조정 검토	공개			
10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개			
【보	고사항】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08-01

1.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심해 해양공학 수조동 연구동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심해 해양공학 수조동·연구동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심해 해양공학 수조동·연구동 신축을 위해 신청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7.13

(3) 신청내용

o 사 업 명 : 심해 해양공학 수조동·연구동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번지 일원(생곡산업단지 D1-1블록)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750 m²

- 건축면적 : 12,202.72m², 연면적 : 18,001.51m²

구 분	건축면적(m²)	연면적(m²)	규 모	최대높이(m)
수조동	11,457.52	15,259.21	지하1층 / 지상3층	32.1
연구동	696.9	2,695.50	지하1층 / 지상4층	20.1
경비실	48.3	46.80	지상1층	3.8
계	12,202.72	18,001.51		

- 최대굴착 깊이 : 지상에서 50.7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7.3.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2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4구역: 평슬라브(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경사지붕(36m 이하, 경사가 3:10 이상)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약 72m) 구역에 해양플랜트 심해 해양공학 수조동 및 연구동을 건설하는 사업 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역사문화경관 및 지하 굴착에 따른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 8. 3.)

- 본 사업은 남해안 해양플랜트R&D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양플랜트 심해 공학수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심해환경을 인공으로 조성하여 해양플랜트 설계결과를 사전에 평가 검증하고 품질을 인증하는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 사업지역은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이주마을(10여 가구)과 야산이 분포하고 김해공항 여객기 이륙경로에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한 편임.
- 허용기준 4구역에 해당하고 건물높이가 인접 야산보다 낮은 점, 시험수조의물은 담수를 사용하고 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낙동강 철새의 서식지간 이동, 먹이원 오염 등 사업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 8. 3.)

- ㅇ 해양공학 연구시설은 선박의 공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됨
- 신청된 연구시설의 규모가 대규모이며 심해 환경을 시험하기 위한 수조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된 50m 굴착은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한 결과, 공사 시공 중에 지하수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낙동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고, 완공 후에도 완전 수밀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시험 전 수조 증진 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시험 후 페기는 정화시설로 배수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인접한 낙동강 철새도래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2. 「하늘다람쥐」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포획

가. 제안사항

「하늘다람쥐」포획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하늘다람쥐」의 생태학적 연구를 위해 현상변경(포획) 신청하는 사항임
- 서울대 이우신 교수가 하늘다람쥐의 생태학적 연구를 위해 2014년 3월 대전 보문산에서 18개체, 원주 백운산에서 18개체 포획 신청하였으나 불허('14.05.23)
- 동일 신청인이 포획 개체수를 줄여 원주 백운산에서 10개체, 대전 보문산에서 10개체 포획 신청하였으나 2014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4.7.30)에서 '원주 백운산에서 1년간 암컷 3개체, 수컷 3개체 포획 및 연구를 허가하고 추가 포획은 연구결과에 따라 재심의'로 조건부 가결한 사항임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 ㅇ 소 재 지 : 전국 일원
 - ㅇ 지 정 일 : 1982.11.16
- (3) 신청내용
 - 개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멸종 위기종인 하늘다람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바, 대전광역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깃대종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전 내 하늘다람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기초생태 연구를 추진 하고자 함.
 - ㅇ 포획 및 발신기 부착내용 : 하늘다람쥐 포획 및 발신기 부착 후 즉시 방사
 - 발신기 무게는 약 2g으로 하늘다람쥐는 최소 체중 67g 이상개체에 부착
 - 발신기 부착 전 에탄올 소량으로 약 1분간 마취

ㅇ 포획장소 및 수량 : 대전광역시 보문산 및 식장산 일대 10개체

○ 포획기간 : 허가일~2016년 3월

라. 검토의견 (*****)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으로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포획 및 발신기 부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 하늘다람쥐와 관련된 국내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많지 않아 신청인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대로 하늘다람쥐 분포 조사, 서식환경 분석, 번식생태조사 및 시기별 이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경우 하늘다람쥐의 생태에 관한 귀중한 연구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획 개체수를 줄여 허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전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 8. 10)

- 하늘다람쥐는 환경부가 지난 8년간(1997-2004년) 조사한 바 전국 119곳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5년간(2006-2010년)은 213곳에서 확인된 바 있어(환경복원 기술학회지 2014년) 마치 개체수가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권역단위와 도엽단위에 의한 조사차이, 이중집계, 관찰시기 등으로 야기된 결과를 배제할 수 없다.
- 환경부가 2009년 대전 일대를 9개 격자로 나누어 조사한 제3차 전국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문산 주변(E5-동구 신안동) 1곳에서만 하늘다람쥐가 확인 되었다. 이 후 보문산 및 식장산에 과연 몇 마리의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지 공식적인 보고가 없다.
- 따라서 하늘다람쥐를 포획하여 방사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이번 신청 계획은 이미 지난해 3월 신청하여 동년 5월 23일 현상변경을 불허한 바 재 신청하여 7월에 다시 반려한 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보문산 및 식장산에 분포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 환경을 먼저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포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포획 후 방사를 제외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예비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면 이들이 선행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1. 보문산과 식장산에 설치한 200개의 인공둥지 중 하늘다람쥐는 몇 개 둥지에서 확인되는지 자료, 2. 보문산과 식장산에서 이미 수행한 하늘다람쥐 흔적 조사 및 GPS 활용 결과, 3. 보문산과 식장산 무인센서카메라에서 확인된 번식 생태 결과, 4. 보문산과 식장산의 서식 환경 조사 결과 등

바. 의결사항 : 보류

3 .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토왕성폭포 전망대 및 탐방로 설치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토왕성폭포 전망대 및 탐방로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토왕성폭포 전망대 및 탐방로 설치를 위해 신청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설악산천연보호구역」
 -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부
 - ㅇ 지 정 일 : 1965, 11, 5,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토왕성폭포 전망대 및 탐방로 설치
 -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번지
 - ㅇ 사업내용 : 토왕성폭포 전망대 2개소

탐방로 목재 보행 데크 (L=330m, W=1.5m, 안전난간H=70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토왕성폭포를 전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와 비룡폭포~전망대까지 목재 데크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 및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명승 제95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2.)

○ 동 신청 건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명승인 비룡폭포에서 노적봉 방향으로 약 480m 구간에 대해 보행데크 및 명승인 토왕산폭포를 조망하기 위해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건으로, 현재 설악동탐방지원센터에서 명승 비룡폭포까지 2.4km 구간은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과 연장하여 약 480m 구간 탐방로를 추가 설치로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명승으로 지정된 토왕산폭포를 관람하게 하여 자연유산 향유 기회 제공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며, 동 탐방로 설치 계획은 산림훼손이 적은 나지를 우선 선택하고 동물 이동성 확보를 위해 탐방로 일부 구간 미설치와 굴곡이 있는 지형은 데크하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산양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15.8.12.)

- 천연기념물 종으로 지정된 산양은 양구·화천지역, 비무장지대,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삼척·봉화지역 및 기타 강원북부권 등에 약 8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인센서카메라 설치와 산양 배설물 크기 측정 등을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북부복원센터) 에서 산양 서식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 북부권 산양 최대 서식지 중 하나로서 최소 251마리의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전역에서 산양의 흔적이 관찰되고 있으나, 이중 산양의 서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외설악의 저항력계곡, 내설악의 흑선동계곡, 장수대 지구 일원으로 보고되고 있음.
- 동 사업지는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경사의 바위가 많고 소나무군락이 우점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장조사 결과 산양 주 서식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비룡폭포~토왕성폭포 전망대 설치구간에 인위적인데크 조성시 초기에는 인위적인 시설물 조성으로 인해 산양의 서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설악산 내 십이선녀탕계곡 일원의 경우 탐방로 데크 위에서 산양의배설물이 자주 관찰되고 있음)
- ㅇ 향후 사업시행 이후 주기적 산양의 서식유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4.「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단독 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번지 4호
 - ㅇ 지 정 일 : 1988. 4. 30.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 번지
 - ㅇ 사업내용 : 농가용 주택과 창고 신축
 - 구 조 : 샌드위치 판넬구조(경사지붕) 1동, 높이 : 4.8m
 - 연면적 : 168.70m², 건축면적 : 168.70m²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8.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3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개별 심의(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 구역은 무허가 과일보관 창고(약50평)를 철거하고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가결

5.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 「보은 서원리 소나무」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4년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4.8.28)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토지소유자)변경, 규모 축소, 문화재와 이격거리 등을 조정하여 부의한 사항임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워리 49번지 4호
 - ㅇ 지 정 일 : 1988. 4. 30.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1종 소매점 신축
 -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 번지
 -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구 조: 샌드위치판넬구조(아스팔트 싱글 지붕) 1동, 높이: 4.8m
 - 연면적 : 98.34m², 건축면적 : 98.34m²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8.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 : 개별 심의(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금회 신청 사업은 토지 소유자 변경, 규모 축소, 이격거리 등을 조정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1회신청	금회신청
문화재와 이격거리	25m	48m
건축구조	목구조(벽체:황토적벽돌), 금속기와지붕	샌드위치판넬 벽체, 아스팔트 스윙 지붕
연면적	129.6 m²	98.34 m²
건축면적	2동(64.8m²+ 64.8m²)	1동(98.34㎡)
건축높이	5.3m	4.8m

마. 의결사항 : 가결

6.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단독 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단독 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 외
 - ㅇ 지 정 일 : 2004. 4. 9.
- (3) 신청내용
 - 이 사 업 명 : 단독 주택 신축
 - ㅇ 사업위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번지 외 *필지
 - ㅇ 사업내용 : 단독 주택 신축
 - 연면적 : 112.20m²
 - 건축면적 : 116.20 m²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높 이 : 3.9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6.6.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 : 개별 심의(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기존 수산물 가공공장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는 건으로 홍조 단괴 해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신청 건은 단독주택 증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상지의 현지 확인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양어장은 건물로 볼 수 없는 가설구조물이며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 따라서 이 건은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신청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판단을 유보함. 다만 신축으로 신청된 경우에도 홍조단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배후 사면에도 자연 상태로 홍조단괴가 토양과 혼합되어 존재하므로 원지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임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홍조단괴 해빈은 현재 우도와 성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천해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홍조단괴에 일시적으로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 해빈으로 이동되어 퇴적된 퇴적물로 이루어진 해빈이며, 해빈퇴적물 내에는 살아 있는 홍조류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이들 퇴적물은 다시 천해로 이동되면 성장이 계속되다가 다시 해빈으로 퇴적되는 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 우도에 분포하는 홍조단괴 해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지질학적인 장소로서 그 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아 세계자연유산 추가지정지역으로도 고려될 수 있을 정도임.
- 홍조단괴 해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지역의 특별한 지질학적인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해빈퇴적물의 지질학적인 가치와 이 해빈퇴적물이 주변의 화산지형과 같이 이루어져 만들고 있는 경관적 가치임. 불행히도 이 지역 이 천염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 해빈부근에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이 해빈의 범(berm) 지점으로부터 육지 방향으로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홍도단괴 퇴적물이 이미 도로와 기존 건물의 난립으로 훼손되거나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추정됨.
- 따라서 홍조단괴 해빈퇴적물 부근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건물이 새로이 건설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해빈 부근에 기존에 분포하는 양어장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경관적으로 매우 흉물스러운 양식장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되어야 할 것이며, 이 지역은 자연그대로의 원형이 복원되어야 할 지점임. 따라서 이 사업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우도 홍조단괴 지역에서 처리된 각종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2009.10월부터 총 12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홍조단괴 중심지역에서 다소 벗어난 북쪽의 2 건만이 허가 되었을 뿐(주택 신축과 공용 주차장 시설), 중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허가 신청은 모두 부결되었음.
- ㅇ 이번의 신청건도 2번 부결되었음(2014.06월, 2014.10월).
- 지질분야의 천연기념물은 주로 학술적 가치에 비중을 두어 지정된 지질유 산이며, 경관적 가치가 클 경우에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홍조단괴 해빈과 같이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크고, 해안에 발달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은 비록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관도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신청지역의 양어장 시설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하지만, 철거 지역 일부에 상업시설로 판단되는 단독주택 신축 허가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부결

7.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 문화재정보센터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주변에 문화재정보센터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1회 신청내역	2회 신청내역	금회 신청내역
(2014.12월)	(2015.6월)	(2015. 8월)
연면적 70㎡내외,	연면적 280㎡ 내외,	연면적 171.94㎡내외,
높이 8m 내외(2층)	높이 11m(옥상 포함), 3층	높이 9m(옥상 포함), 3층
팔각정 형태(목구조)	원형(철근콘크리트조)	복합구조(철근조+목구조)
-1층(문화정보 전시 및 쉼	-1층(문화재정보 안내실)	-1층: 안내실
터) -2층(전망대)	-2~3층(전시실, 옥상 전망대)	-2층: 전시실, 3층: 누각
o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14.12.26) ⇒수월봉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규모를 축소하여 문화재청 설계 검토를 받은 후 사업 시행할 것	o 심의결과 : 부결 (15.6.24) ⇒건축물 규모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현 구조물 : 1969년 축조, 육각정 형태의 전망대, 면적 29.8㎡. 높이 6.0m

-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ㅇ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 등
 - ㅇ 지정일 : 2009. 12. 11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 수월봉 문화재정보센터 신축
 - ㅇ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 *번지(수월봉 정상)

- 사업목적 : 수월봉 인근에 산재한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정보를 전시하고 쉼터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재 정보 교육장으로 활용 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 ㅇ 사업내용
 - 구조 및 형태 : 복합구조[철근콘크리트+목구조(누각부분)]
 - 규모 : 연면적 171.94m² 내외, 높이 9m내외(옥상 포함), 3층
 - 용도 : 1층(안내실), 2층(전시실), 3층(누각)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12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 개별 심의(기존 규모 재.개축, 절·성토금지)

라. 검토의견(*****)

 신청사업 구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에서 기존 노후된 육각정 전망대를 철거하고 인근 공유지에 탐방객을 위한 문화재정보센터를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최초 신청안 관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4.12.17)

- 현재 수월봉에 축조되어 있는 육각정은 노후됨은 물론이고 형태로도 경관
 적으로 철거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됨.
- 신설 계획된 구조물은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시설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시설의 형태 등이 전통 양식에 따라 설치된다고 하나, 다만 그 규모가 기존 시설에 비해 다소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

바. 의결사항: 부결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08-08

8. 「정선 용소동굴」 공개제한

가. 제안사항

「정선 용소동굴」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제한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정선 용소동굴」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제한을 부의하는 사항임 ※ 정선군에서 익사 사고 등 안전문제와 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 제한 요구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
 - ㅇ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 ㅇ 지정일 : 2015. 1. 16.
- (3) 제한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4) 운 용
 - ㅇ 공개 제한 사항의 관보고시, 관리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 통지
 - ㅇ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통지 및 공개제한 안내판 설치
 - 문화재 수리·관리, 학술조사,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허가에 의한 출입 등
- (5) 공개제한 내용
 - ㅇ 공개제한 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 조치 해제시까지
 - ㅇ 공개제한 지역 : 용소동굴 내부 전 지역
 - ㅇ 공개제한 사유 :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 ㅇ 공개제한 위반시 제재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ㅇ 공개제한의 예외
 - 국가 및 당해 문화재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음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제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가결

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문화재구역 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문화재구역 조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ㅇ 주요 경과
 - 2011.1.1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 2015.6.18 문화재구역 변경 제안(양양군)
 - · 양양군 오색약수 인근 망월사 부지 민원해결 과정에서 오색약수 지정 구역이 잘못 고시된 것을 확인
 - 2015.8.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 신 청 인 : 양양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외
 - ㅇ 지 정 일 : 2011. 1. 13
- (3) 지정구역 변경 사유
 - 지적 현황 측량 및 오색약수 현지조사 검토 결과 오색약수 지정 구역이
 잘못 고시된 것이 확인되어 문화재구역을 조정 하고자 함.
- (4) 문화재구역 조정(안)

연	2 11 I	-1.11	지번	-1.11	-1 17	기 지	정면적	변경 >	지정면적	, A -1	w) —
번			지목	지적(m²)	지정구역(m)	지적(m²)	지정구역(m²)	소유자	비고		
1		산1-25	임	5,964,121	200	5,964,121	42	국 (산림청)	지정구역 일부 해제		
2	양양군 서면	산1-20	종	5,248	200	-	-	국 (산림청)	지정구역 해제		
3	오색리	산127-3	천	-	-	4,722	262	공유 (강원도)	지정구역 추가		
4		460-2	잡	-	-	5,906	96	공유 (강원도)	지정구역 추가		
	계			5,969,369	400	5,974,749	400				

라. 검토의견(*****)

○ 오색약수 지정 구역이 잘못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0)

- 천연기념물인 양양 오색약수 지정구역 지번이 산1-20과 산1-25의 2개 필 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바른 지번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건임.
- 오색약수는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 현황 측량 성과에 따라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현지조사 결과 정확한 위치가 확인 되었다고 판단됨.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0)

- 천연기념물 제529호(2011.01.13.) 양양 오색약수의 지정구역 2필지 400㎡가 실제의 지적·지번과 차이가 있어 지정구역은 반드시 정정되어야 함.
- 문화재청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indexMain.do)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정문화재(특히 천연기념물과 명승) 지정구역 공간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정구역은 현지의 지적경계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설정하고 좌표나 위성사진
 및 지형도 등의 자료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0)

- 기존의 지정구역에 대한 지번이 잘못되어 지적현황 측량을 통해 얻은 변경 지번으로 정정해야 함.
- o 향후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 신청시에는 제출된 지적도만으로는 현장에서 위치가 맞는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형도와 지적도가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지형도 위에 지적도가 표시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와 같이 지정구역이 잘못 표시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가결

10.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ㅇ「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0 경 과
 - 2015. 7. 2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 2015. 7. 31.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 지정 요청(제주특별자치도)
 - 2015. 8. 7.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외
 - ㅇ 지 정 일 : 1971. 9. 30.
- (3) 지정구역 확대 사유
 - 소천굴 모래 제거공사 중 추가 발견된 동굴에 대하여 2011년도에 측량
 조사를 시행한 바, 동굴유로의 제3입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
 - 추가 조사된 32필지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용암동굴이 지닌 자연·역사적 가치를 보존·관리해 나감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동굴 함몰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
 - (4)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안)

		기 지정면적			추가 지정 신청면적			변경 지정면적		
소재지	필지	지적(m²)	지정면적 (m²)	필지	지적(m²)	지정면적 (m²)	필지	지적(m²)	지정면적 (m²)	
제주시 한림읍	246	1,575,117	548,671	32	520,761	116,057	278	2,095,878	664,728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내역 현황

일련			ス]	면적	(m²)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	금능리	919-1	임	662	66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박**
2		919	임	1,602	1,6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장** 외 3인
3		919-2	임	662	66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0]**
4		918	임	496	4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0]**
5		918-1	임	496	4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6		918-2	임	1,001	1,0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송**
7		917	임	413	413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심**
8		917-1	임	662	66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박**
9		917-2	임	941	94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오**
10		2243-2	임	182,705	21,166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11		907	임	1,769	1,769	서울 강남구 도곡동	0]**
12		905	임	3,620	1,712	서귀포시 예래로	박**
13		906	임	3,491	3,491	서울 성북구 성북동	박**
14		904	임	3,273	3,273	제주시 삼도일동	장**
15		903	임	1,279	1,279	미등기	방**
16		875	임	2,638	2,63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강**
17		902	임	3,302	3,302	서울 성북구 성북동	박**
18		901	임	2,235	2,235	제주시 삼도일동	장**
19		900	임	4,783	1,700	서귀포시 예래로	박**
20		874	임	4,069	2,66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홍** 외 1인
21		873	임	2,136	2,136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u></u>
22		876	임	6,069	6,069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박** 외 4인
23		856	임	3,183	3,183	서울 성북구 성북동	박**
24		857	임	5,021	5,021	부산 중구 동광동	0]**
25		858	임	2,036	2,036	전남 여수시 공화동	최**
26		864	임	12,988	12,988	서귀포시 예래로	박**
27		859	임	5,564	2,259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u>इ</u> **
28		2316	도	182,705	2,922	국유지	국(건설부)
29		산20	임	58,612	22,026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30		산21	도	3,750	1,936	국유지	국(건설부)
31		산1	임	8,033	1,356	제주시 삼양1동	한**
32		산22	도	10,565	1,961	국유지	국(건설부)
ট্	합계			520,761	116,057		

라. 검토의견(*****)

○ 측량을 통하여 추가 조사된 동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5.7.27./ 가결)

기존 소천굴 연장 동굴유로로 확대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하며 허용 기준은 기존 지정된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함

○ 주민의견 수렴

- · 기 간: 2015. 5. 19 ~ 6. 10.
- 대 상 : 관련부서 및 마을주민, 제주시 문화예술과, 한림읍사무소
- · 결 과 : 의견접수 3건
 - 보호구역에 편입되면 재산권행사, 각종 건축 등 제한됨으로 기존 용암 동굴지대(소천굴)로 충분하므로 확대지정 반대
 - 문화재구역 잔여토지가 2구역으로 지정, 현상변경 및 건축행위 가능지로 재산권 행사허용시 조건부 동의함
 - 문화재구역 확대지정에 찬성하나 적절한 보상요구가 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신규 편입대상은 기존의 소천굴의 서측 연장부로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다수의 동굴 2차 생성물이 발견되고 있음. 특히 이들 중 용암동굴 지대에서 형성될 수 없는 석회질 2차 생성물의 발달은 지질학적으로 특수한 현상이므로 보존, 보호가 필요함
- ㅇ 따라서 소천굴의 연장부로 확인된 지역의 지정구역 편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소천굴은 동굴 전체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동굴 내에 보전되어 있는 내부의 동굴미지형이 매우 뛰어난 가치를 보여주는 용암동굴임. 소천굴은 크게 두 개의 주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주굴은 탄산염퇴적물에 의해 통로가 막혀 있었음. 그 이유는 과거 소천굴의 다른 입구(제3입구)가 존재 하였으나 해변으로부터 이동된 탄산염 사구퇴적물이 동굴의 입구와 통로를 막았기 때문임

- 제주시에서는 소천굴 제3입구에 있는 탄산염퇴적물을 제거하여 제2입구를 원래 막혀있기 전의 상태로 복원하였으며, 그 결과 소천굴의 새로운 통로 가 발견되었음. 동굴 내부에는 과거 동굴 내로 우연히 들어온 동물뼈, 역사 학적 가치를 지니는 토기와 과거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은 후에 남겨 놓은 동물뼈가 여러 지점에 남아 있고 또한 이 동굴 내에는 용암동굴이 형성된 후 용암이 흐르면서 남겨놓은 여러 미지형이 잘 발달하며, 일부 구간에는 용암동굴생성물도 잘 나타나 있음.
-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연유산적 가치는 이 동굴 내에 분포하는 탄산염 동굴 생성물임. 아직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새로이 발견된 소천굴의 통로 내에 넓은 구간에 현재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 이들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구의 형성 연령과 이들 동굴생성물에 대한 지질학적인 조사가 요구됨.
- 따라서 소천굴 내에 새로이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역으로서의 확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소천굴은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도 지역 내 세계자연유산 확대 지정 연구조사에서 세계자연유산의 후보로서 고려되고 있는 동굴임. 현재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구간의 하류 연장선에는 한들굴이 분포함. 따라서 한들굴과 소천굴은 하나의 용암동굴계일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한 정밀한 학술조사가 요구됨.
- 만일 이 두 동굴이 같은 기원의 용암지대로부터 형성된 용암동굴계라면 한 들굴도 보호지역에 추가도 확대지정 할 필요가 있음.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소천굴을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에 포함시켜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할 당시(1971.09.30.)의 소천굴은 제1입구에서부터 제3입구까지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그 이후의 발달 상태나 규모는 제3입구로 유입된 모래로 완전히 막혀 있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제3입구까지만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었음.
- 2010년10월 제3입구가 발굴되어 출입도 가능해져 북서 방향으로 약 705m 더 연장되는 것이 확인되고 측량도도 작성되었음.
- 소천굴 지표에는 탄산칼슘(CaCO3)으로 이루어진 사구가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특히 제3입구 주변부터 하류구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동굴이나 당처물동굴과 같은 화려한 석회장식 용암동굴로 변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가 확장대상 동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지만, 소천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확대지정 후,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2014.03.11.)에 의거 종합학술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
- 소천굴의 끝부분 이후, 하류 지역에는 한들굴, 1132번 도로 개설중 발견된 동굴, 팔자굴, 조롱굴, 정수구굴 등의 동굴들이 연이어 발달하고 있어, 원래 소천굴은 이들과 연결되어 바다까지 발달되어 있었으나, 중간 중간에서의 동굴의 함몰 이나 유입된 용암으로 막혀 여러 개의 동굴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지정구역 확대는 신청된 안으로 정하되, 소천굴 끝부분 이후의 동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천굴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함.

바. 의결사항: 가결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08-11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8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179호	ㅇ 허가사항	
	낙동강 하류	- 사 업 명: 기후변화에 따른 괭이갈매기 번식활동 변화 연구	
	철새 도래지	- 사업위치: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 **	
	결에 고네시	(문화재구역 내)	<조건부 -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335호 통영 홍도 괭이 갈매기	,
		번식지 내 무선송수신 미기상 관측시스템 설치	허가>
		ㅇ 허가기간 : 2015.8.24~2015.9.30.	
		ㅇ 허가조건	
원 Al.		- 제출된 연구계획서 대로 시행하되 번식지의 출입	
현상		횟수와 출입인원을 최소화 할 것	
변경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97/6	제179호	ㅇ 허가사항	
	낙동강 하류	- 사 업 명 : 낙동강 철새도래지 해조류(물김)양식장 조성	∠ ¬ ¬] H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동선동 지선해역 80,000㎡	<조건부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내)	허가>
		- 사업내용 : 해조류(물김) 양식	
		ㅇ 허가기간 : 2015. 8. 24- 2018. 6. 30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ㅇ 허가조건	
		- 양식장 인근해역의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퇴치용 폭음탄이나 총포류의 사용을 금하고, 기존	
		양식장의 폐그물, 어망 등 오염유발물을 철저하게	
		제거 할 것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179호	ㅇ 허가사항	
	낙동강 하류	- 사 업 명 : 낙동강 철새도래지 해조류(물김)양식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동선동 지선해역 50,000㎡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해조류(물김) 양식	<조건부
		ㅇ 허가기간 : 2015. 8. 24- 2018. 6. 30	허가>
		ㅇ 허가조건	
		- 양식장 인근해역의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퇴치용 폭음탄이나 총포류의 사용을 금하고, 기존	
		양식장의 폐그물, 어망 등 오염유발물을 철저하게	
-3.3		제거 할 것	
현상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변경	제179호	ㅇ 허가사항	
허가	낙동강 하류	- 사업명 : 다대포 해수욕장 내 2015 바다미술제 작품 설치	
	철새 도래지	-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번지 일원(다대포 해	<조건부
		수욕장 내, 허용기준 1구역·5구역)	허가>
		- 사업내용 : 작품전시용 컨테이너 박스 3~5동 설치	91712
		ㅇ 허가기간 : 2015. 8. 30 ~ 2015. 10. 31까지	
		ㅇ 허가조건 : 겨울철새 도래가 시작되는 10월 31일까지	
		모든작품을 철거완료 할것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제330호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	
	수달	o 허가사항 : 수달(폐사체) 소각	<허가>
	. —	○ 수량 : 1개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 신청인: ***** ○ 신청목적: 물거미 증식 및 보전연구 ○ 허가사항: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내 물거미 포획 및 반출 ○ 수량: 물거미 50개체 ○ 허가기간: 2015.08.04~2015.08.05(2일간)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신청인: ***** ○ 신청목적: 저어새의 보전 및 유전자 다양성 연구 ○ 신청사항: 저어새 6개체 샘플6개 연구 - 입수경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된 저어새 중 치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 이용 ○ 허가사항: 저어새 혈액샘플 6개 연구 이용(1개 샘플당 0.3~0.5ml) ○ 허가기간: 2015.07.21~2015.08.20. 	<허가>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신청목적: 원앙의 증식 및 관찰 교육용 ○ 허가사항: 원앙 사육 ○ 수량: 2개체 - 입수경위: 2013.6.17 기 허가자 박제훈으로부터 기증 ○ 허가기간: 2015.07.24~2020.07.23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등 10종	 ○ 신청인: **** ○ 허가사항: 수리부엉이 등 10종 14개체 혈액 및 조직 샘플 이용 - 혈액 샘플 이용: 수리부엉이 등 10종 14개체 (1개 샘플당 0.8~10cc) - 조직시료 이용: 소쩍새 2개체(1개체 40g, 1개체 50g) - 입수경위: **야생동물센터에 구조되었으나 회복 불능으로 안락사 시킨 개체에서 채취 ○ 허가기간: 2015.07.25~2015.09.30 ○ 허가목적: 조류의 유전체 연구 	<허가 >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신청목적: 장수하늘소의 복원증식을 우한 학술연구 ○ 허가사항: 장수하늘소 포획 ○ 수량: 1쌍(암1, 수1) ○ 허가기간: 2015.07.28~2015.08.20 ○ 허가장소 -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 일대, - 경기도 포천 광릉 일대 - 강원도 강릉시 연고면 삼산리 일대 ○ 허가조건: 전체 포획 수는 허가 신청된 3지역을 포함해 1쌍(암1, 수1)만을 포획허가(개별지역 각1쌍이 아님)함 	<조건부 허가>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신청목적: 원앙의 홍보관림 및 증식 ○ 허가사항: 원앙 사육 ○ 수량: 2개체 - 입수경위: 1999.2 기 허가자 ***로부터 기증 ○ 허가기간: 2015.07.29~2020.07.28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신청목적: 학생의 교육 및 증식 ○ 허가사항: 원앙 사육 ○ 수량: 13개체 ○ 허가기간: 2015.08.03~2020.08.02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 신청인: **** ○ 신청목적: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 ○ 허가사항: 솔부엉이(폐사체) 박제 ○ 수량: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신청목적: 생태전시 및 교육 자료 활용 ○ 허가사항: 산양(폐사체) 박제 ○ 수량: 3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218호	ㅇ 신청목적 : 장수하늘소 개체군간 계통분류학적 연구	
	·	재료 활용	<허가>
	장수하늘소	ㅇ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사체 표본제작 및 해부 시료채취	\\ \ \ \ \ \ \ \
		ㅇ 수량 : 장수하늘소 1개체	
		- 입수경위 : 국립수목원 전시원에서 사체 발견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323-8호	o 신청목적 : 황조롱이 및 독수리 재활 증식 및 전시	
	황조롱이	ㅇ 허가사항 : 황조롱이 사육	
	20 TO 1	ㅇ 수량 : 황조롱이 5개체	<허가>
		- 입수경위 : ***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된	
		개체로 방사가 불가능한 개체 인수	
		ㅇ 허가기간 : 2015.08.12~2020.08.11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현상	제243-1호	○ 신청목적 : 황조롱이 및 독수리 재활 증식 및 전시	
변경	독수리	ㅇ 허가사항 : 독수리 사육	
허가	, , ,	ㅇ 수량 : 독수리 2개체	<허가>
		- 입수경위 : ***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된	
		개체로 방사가 불가능한 개체 인수	
		o 허가기간 : 2015.08.12~2020.08.11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제330호	O 신청목적 : 천연기념물 전시를 통한 국민홍보 및 교육	
	수달	서비스 제공	<허가>
		○ 허가사항 : 수달(폐사체) 박제	
	키어키네모	○ 수량 : 1개체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제217호 산양	신청목적: 산양의 생태축 복원을 위한 증식,개체교류 및 연구를 위한 사육	
	ਦੇ ਨੂੰ	기세교규 및 연구를 귀한 사육 이 허가사항 : 산양 사육	<조건부
		이 어가야양 · 산당 사육 이 수량 : 5개체	허가>
		- 입수경위 : 기아탈진으로 구조·치료된 산양 총5개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인제5개체, 양양 1개체)	
		ㅇ 허가기간 : 2015.08.18~2018.12.31	
		ㅇ 허가조건 : 허가기간 내라도 연구목적을 달성하거나	
		연구 실효성을 잃는 경우 방사를 원칙으로	
		하며 방사 시 방사지를 신중히 선정할 것,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202호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	/위기시
	두루미	ㅇ 허가사항 : 두루미(폐사체) 소각	<허가>
		ㅇ 수량 : 1개체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112호	ㅇ 허가사항	
	영광 불갑사	- 사 업 명 : 불갑사 주변 진입로 황토포장 및 배수로 정비	
현상	참식나무	-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번지 등	
변경		(문화재구역 내외)	
허가	71011	- 사업내용	<허가>
		· 진입로 황토포장 : L=446m, B=3.5~8.0m	
		· 배수로 정비 : 기존 석축 배수로를 암거배수로로 정비	
		(L=48m), 자연석 배수로 정비(L=55m,	
		폭 60cm, 높이 50cm)	
		ㅇ 허가기간 : 2015.8.18~5016.8.17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182호 한라산	ㅇ 허가사항	
	천연보호구역	- 사 업 명 : 한라산국립공원 내 취약지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노루생이~어승생 구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번지	
		등 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km 이격,	<허가>
		세계자연유산지구 외)	
		- 사업내용	
		·사업구간 : 노루생이 삼거리~어승생 삼거리(1,100도로)	
		·사업면적 : 583.72㎡	
		· 지중화 사업 : 구간길이 1,073m. 굴착 폭 1.1m, 깊이	

Omm, 맨홀 4조,
사비하기 1리
상변압기 1대
1
' 남원읍 신례리
Om 이경)
om 이전
최고높이 3.3m
] म]
·효동 ****번지
2 2
내데크
높이 1.5~2.5m
호 (1.5°2.5III
계손이 최소화될
따라 조정하고,
· 고 철거구간의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 신 청 인 : *****				
	제336호	ㅇ 허가사항				
	독도	- 사 업 명 :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독도 중계소 설치				
	천연보호구역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동도 내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KT 철탑 내 안테나 설치	<허가>			
		· 수량 : 총4기(VHF-DSC 안테나 3기, AIS 안테나 1기)				
	· 규격 : Φ1.5cm, 길이 2m					
		ㅇ 허가기간 : 2015.6.26~2016.6.25				
		○ 허가조건 : 안테나 색상은 기존 KT 철탑 색상과				
		어울리도록 시공하여야 함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422호 차귀도	ㅇ 허가사항				
	천연보호구역	- 사 업 명 : 이동식 탐방초소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번지(문화재구역 내)	<불허>			
현상		- 사업내용				
변경		·크기 : 2000×2500mm (6면체)				
허가		· 재질 : FRP 단열재				
		·설치방법 : 철제 와이어로 고정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469호	ㅇ 허가사항				
	예천 금당실	- 사업명 : 예천 금당실 송림 주변 오비봉 정비사업				
	송림	- 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산**번지 *호				
		* 문화재로부터 214m 이격(허용기준1구역)				
		- 사업내용	<허가>			
		·등산로 신설(L= 229m): 경사지 매트 설치 (B= 1.5m,				
		L=80m), 마사토 포장 (B= 1.5m, L=149m)				
		· 기존 등산로 정비 (L=610m) : 경사지 매트 설치				
		(B= 1.5m, L=163m), 마사토 포장 (B= 1.5m, L=447m)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刊	고
		· 신설구간 수목 제거(수고 5~10m) : 아카시아(10주),		
		미루나무 (12주), 은사시나무(8주)		
		· 농사 관수용 흄관 매립 (@18+16~@12+10) :		
		L= 126m, D=150mm, 집수정 5개소		
		ㅇ 허가기간 : 2015.7.20 ~ 2015.12.31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405호	ㅇ 허가사항		
	의성 사촌리	- 사업명 : 의성 사촌리 가로숲 주변 오수관로 매립공사		
	가로숲	- 위치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번지등 ***필지		
		* 문화재로부터 500m		
		- 사업내용 :	<허	フト>
		· 오수관로(D80~D200m): L=4,026.8m	\ - 1	/ /
		· 오수콘크리트 지하맨홀 (원형 1.3m*1.3m*1.8m, 107개소)		
현상		(소형 0.9m*0.9m*1.6m, 7개소)		
변경		·오수맨홀지하펌프장 (3.1m*.3.1-*4.9m, 1개소)		
허가		ㅇ 허가기간 : 2015.8.18 ~ 2018.12.31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234호	ㅇ 허가사항		
	양산 신전리	- 사업명 :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주변 단독주택 개축		
	이팝나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 **-*번지		
		* 문화재로부터 8m 이격(허용기준 1구역)	<허	가>
		- 사업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1동 개축		
		건축면적(처마선포함) : 159.12㎡, 연면적 :140.54㎡		
		ㅇ 허가기간 : 2015.8.24 ~ 2015.12.31		
	천연기념물	○ 신 청 인 : ****		
	제171호	ㅇ 허가사항		
	대암산 · 대우산	- 사업명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군사시설	. = 3	_1.
	천연보호구역	(장비호) 신축	<허	가>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번지		
		(문화재구역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구분 현 변 경 가	전연기념물 제438호 제주우도 홍조단괴	주 요 내 용 - 사업내용: · 콘크리트 장비호(국방군사시설) 1동 신축 : A=132.24㎡, H=6.2m (장비호 차폐를 위한 상단 H=0.6m 복토 포함) · 장비호 서축 콘크리트 계단 설치 : W=1.2m, L=4.2m · 경계울타리 신설(철망 및 판막) : H=3m(판막H=1.2m) L= 50m · 통신시설 : CCTV(2개소) 통신케이블 지중매설 L=101m · 전기공사 : 지중매설 47m · 건설폐기물 : 43.257톤 ○ 허가기간 : 2015.8.18. ~ 2016.6.30.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부유식 구조물 1식 : 부유식 폰툰, 발라스 등 · 고무보트 : 3대 ○ 허가기간 : 2015.7.20 ~ 2016.6.30. ○ 허가조건 - 부유식 구조물 및 계류장 설치(제거)시 홍조단괴가 성장하고 있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유식 구조물 및 고무보트 철거(원상 복구) - 해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는 반드시 우도	
		 해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는 반드시 우도 홍조단괴 해빈 밖에서 하고, 매주 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할 것. 레저사업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문화재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질 것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인 : ***	
	제438호	ㅇ 허가사항	
	제주우도	- 사 업 명 : 해양 레저사업 운영	
	홍조단괴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부유식 구조물 1식 : 조립식 폰툰 등	
		· 제트보트 : 1대	
		ㅇ 허가기간 : 2015.7.20 ~ 2016.6.30.	
		ㅇ 허가조건	<조건부
		- 부유식 구조물 및 계류장 설치(제거)시 홍조단괴가	허가>
		성장하고 있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유식 구조물 및 고무보트	
		철거(원상 복구)	
현상		- 해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는 반드시 우도	
변경		홍조단괴 해빈 밖에서 하고, 매주 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할 것.	
허가		- 레저사업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문화재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질 것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464호	ㅇ 허가사항	
	제주사람발자국과	- 사 업 명 : 지오인포·지오샵 신축	
	동물발자국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화석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 , ,	- 사업내용	<조건부
		· 건축면적 : 27.00㎡	허가>
		· 연면적 : 27.00 m²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컨테이너구조(가설 건축물)	
		ㅇ 허가기간 : 2015.7.22 ~ 2015.10.31.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刊	고
		ㅇ 허가조건		
		- 지오인포·지오샵 사업 유지기간(5년)이 끝나는 즉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다.(철거일 : 2020.12.30까지)		
		스 시청이 · materials		
	천연기념물	○ 신청인 : ***** ○ 허가사항		
	제98호	- 사 업 명 : 동굴내 미생물 채취		
	제주김녕굴 및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용암동굴)		
	만장굴 외	(문화재구역 내)		
	용암동굴 6개	- 사업내용		
		· 동굴별 : 액상시료 약50ml, 고상시료 약50mg		
		ㅇ 허가기간 : 2015.8.1 ~ 2015.10.30.		
		ㅇ 허가조건		
		- 계획서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미생물 등을 채취 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함	< 조조	건부
현상		- 채취·반출 작업 시 제주특별자치도(동굴 전문가) 담	허기	}>
변경		당직원과 반드시 동행하여 주변 동굴 생성물 등의 훼	,	
허가		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출입 전 안전사고 방		
		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허가 동굴 중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은 동굴내에 탄		
		산염광물로 이루어진 동굴생성물이 다수 분포하기 때		
		문에 두 동굴은 동굴입구 쪽 동굴생성물이 많이 분		
		포하지 않은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		
		- 작업일자, 채취 지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동굴전문가)		
		직원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결과 보고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고 관리단체에도 통보		
		내 결과 모고시를 누다 장에 제굴하고 한다던제에도 중모		
	명승 제1호	○ 신 청 인 : *****		
	명주 청학동	ㅇ 허가사항	<조 ²	건부
	소금강	- 사업명 : 강릉시 오대산국립공원 공용화기지국 설치공사	허기	}>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	,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현 원 경 가	명승 제37호 동해무릉계곡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이동통신 중계기(H=11m/3기) 설치 및 광 케이블 매립 ○ 허가조건 - 중계기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폐하고, 광케이블 매설 시 식생 훼손 최소화(강릉시청의 현장 감독 하에 설치) - 타 통신사에서 공용으로 중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무상으로 제공함 ○ 허가기간 : 2015.7.29 ~ 2015.9.28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동해시 무릉계곡 공용화기지국 설치공사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이동통신 중계기(H=16m/1기) 및 광케이블 설치 ○ 허가조건 - 중계기는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폐하고, 광케이블 매설 시 식생 훼손 최소화(동해시청의 현장 감독 하에 설치) - 타 통신사에서 공용으로 중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무상으로 제공함 ○ 허가기간 : 2015.7.29 ~ 2015.9.28	<조건부 허가>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 신 청 인: ****** ○ 허가사항 - 사업명: 오륙도 주민편의공간 조성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 *** * 문화재로부터 400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사업내용: 황토포장, 초화류・관목・수목 식재, 조경석 쌓기, 벤치 설치 ○ 허가기간: 2015.7.29 ~ 2015.11.28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명승 제43호	ㅇ 신 청 인 : ***					
	제주 서귀포	ㅇ 허가사항					
	정방폭포	- 사업명 : 토평동 호스텔 신축공사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번지외 *필지					
		* 문화재로부터 400m 이격(2구역: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1 1 .				
		지하3m 이상 굴착 시 허가절차 이행)	<허가>				
		-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 신축					
		· 건축면적 643.34㎡, 연면적 2,430.18㎡, 높이 13.36m					
		(지하 1층, 지상 3층)					
		ㅇ 허가기간 : 2015.7.29 ~ 2016.8.28					
	명승 제78호	ㅇ 신 청 인 : ***					
	제주 서귀포	ㅇ 허가사항					
	쇠소깍	- 사업명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					
		* 문화재로부터 12m 이격(2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 ¬] H				
현상		- 사업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휴게음식점)	<조건부				
변경		· 연면적 82.12㎡, 지상 1층	허가>				
허가		ㅇ 허가조건					
		- 인접도로에서 6m 이상 이격하고, 건물높이는 4.5m 이					
		하로 건축할 것					
		ㅇ 허가기간 : 2015.7.29 ~ 2015.12.31					
	명승 제78호	ㅇ 신 청 인 : ***					
	제주 서귀포	ㅇ 허가사항					
	쇠소깍	- 사업명 :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					
		* 문화재로부터 12m 이격(2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조건부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일반음식점)	허가>				
		· 연면적 187.71㎡, 높이 3.9m(지상 1층)					
		ㅇ 허가조건					
		- 인접도로에서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할 것					
		ㅇ 허가기간 : 2015.7.29 ~ 2016.9.30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명승 제62호	ㅇ 신 청 인 : ****	
	가야산 해인사	ㅇ 허가사항	
	일원	- 사업명 : 2015년 해인사 금강굴 화장실 개축공사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화장실 이전 및 개축(면적 32.4㎡, 한식 목구조)	
		· 석축 정비(길이 85m, 면적 210.4㎡)	
		ㅇ 허가조건	
		- 화장실의 건물 높이(용마루 상단)는 반자 높이와 지붕	<조건부 -
		물매 등을 조정하여 4.7m이하로 할 것	허가>
		- 지붕을 건식의 개판으로 시공하는데 맞추어 연목 말구	
		의 굵기를 11cm이하로 축소하고, 대량과 도리의 주요	
		구조재의 굵기 등도 적절히 축소 조정할 것	
		- 외벽에는 전벽돌을 사용하여 반화방벽을 쌓아 주위경	
현상		관 조화 및 보온 성능을 향상시킬 것	
변경		- 화장실 주변 석축은 기존의 자연석 허튼층 쌓기한 석	
허가		축과 동일한 수법으로 시공할 것	
		ㅇ 허가기간 : 2015.8.10 ~ 2016.8.9	
	명승 제38호	ㅇ 신 청 인 : ***	
	장성 백양사	ㅇ 허가사항	
	백학봉	- 사업명 : 2015년 백양사 천진암 화장실 신축공사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번지 등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면적 42.12㎡, 한식 목구조)	<조건부 -
		ㅇ 허가조건	허가>
		- 화장실 전면부와 측면부에 탱자나무 등 관목류를 식	
		재하여 차폐할 것	
		ㅇ 허가기간 : 2015.8.24 ~ 2015.11.30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명승 제111호	ㅇ 신 청 인 : ***	
	구례 오산	ㅇ 허가사항	
	사성암 일원	- 사업명 : 구례 사성암 요사채 개축	
		- 위치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산*-* 등	
현상		(문화재구역 내)	<조건부
변경		- 사업내용 : 요사채 개축(면적 32.12m², 한식 목구조)	
허가			허가>
		ㅇ 허가조건	
		- 현 요사채의 철거 후 기존 지형 및 암반의 손상이 없	
		도록 평면계획을 재수립하여 변경허가 받을 것	
		ㅇ 허가기간 : 2015.8.24 ~ 2016.1.31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제74호 봉화	ㅇ 허가사항	
	대현리	- 사업명 : 현불사 요사채 신축	
	서식지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 신축 면적 확대 변경	<허가사항
		(10.8m², 3.27평 증)	변경허가>
		(당초 면적: 45㎡, 13.61평) → (변경 면적: 55.8㎡, 16.88평)	_
		○ 허가기간 : 허가일~2015. 12. 20까지	
		ㅇ 허가조건	
=1 -1		-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수와 공사 완료 후 생활	
허가		하·오수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토록 할 것	
사항			
변경	천연기념물	ㅇ 신청인 : ***	
07/[제179호	ㅇ 허가사항	
	낙동강 하류	- 사업명 : 낙동강 철새도래지 주변 캠핑장 조성	<허가사항
	철새 도래지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번지*호	변경허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허용기준 5구역)	
		○ 변경 허가사항 : 허가기간 변경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 (당	초)허가일 ~ '15. 8. 30	→ (변경)허가일 ~	'15. 12. 31.				
		ㅇ 허가	조건						
		- 캠핑	- 캠핑장 시설물 설치시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반						
		こ/	드시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을 것						
	천연기념물	ㅇ 신 청) 신 청 인 : ****						
	제182호 한라산		허가사항						
	천연보호구역	- 사	업 명 : 서귀포학생		모험안전				
			체험시설(짚	,					
		- 사임]위치 : 제주특별자치		,				
		и -		으로부터 70m 이격	()				
		- 먼경	령허가 내용 	Γ	1				
허가			당초	변경	비고				
사항 변경			○1개소, 길이 40m ○출발데크	○1개소, 길이 50m ○출발데크	증 10m				
허가		기존	- 면적: 99.38m²	- 면적: 108m²	증 8.62 m²				
		시설 변경	- 높이: 7.8m ㅇ도착데크	- 높이: 7.8m ㅇ도착데크		 < 허가사항			
			- 면적: 98.84m²	- 면적: 99m²	중 0.16m²	 변경허가>			
			- 높이: 7.8m	- 높이: 10.8m	증 3m	0 -1/1/			
			○1개소, 길이 100m	○1개소, 길이 100m					
			○출발데크 - 면적: 89.98㎡	○출발데크 - 면적: 119㎡	증 29.02m²				
		짚라인	- 선역: 09.96m - 높이: 10.8m	- 현석: 119m - 높이: 11.6m	증 29.02배 증 0.8m				
		신설	ㅇ도착데크	ㅇ도착데크					
			- 면적: 99.46m²	- 면적: 125㎡	증 26.54m²				
			- 높이: 7.2m	- 높이: 8.7m	중 1.5m				
		ㅇ 허가기간 : 2015.7.20~2016.8.19							
		ㅇ 허가	조건 : 이용객 안전대	대책을 강구하여 시) 업 시행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기 허가사항>	
	제537호	ㅇ 신청인 : ****	
	포천 한탄강	ㅇ 허가사항	
	현무암협곡과	- 사업명 : 한탄강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건설	
	비둘기낭 폭포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 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이격, 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도로명 : 리도 202호선	
		· 도로연장 : 1.77km	
		· 도로폭원 : 6.5m~4.0m(2차선~1차선)	<불허>
		<변경 신청사항>	
		ㅇ 사업내용 : 비둘기낭 폭포 진입로 변경	
허가		- 리도202호선에서 접속 111m → 접근도로에서 접속177m	
사항		- 폭원 6.0m → 8.0m	
변경		ㅇ 통지결과 : 불허	
허가		- 당초 허가시(2013.1.28)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	
		자연환경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허가 된 사항임	
		- 금번 변경 노선 계획(안)은 용암대지 가운데 둑(성토)을	
		쌓는 등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천연기념물	<기 허가사항>	
	제342호	ㅇ 신청인 : ***	
	제주어음리	ㅇ 허가사항	
	빌레못동굴	- 사업명 : 건물8개동 및 지하수1공 설치	
	_ ,,,,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5m이격, 허용기준1·2구역)	<허가사항
		- 사업내용	변경허가>
		· 건축면적 : 1,470㎡ · 연면적 : 1,93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층수 : 지상2층	
		· 건물높이 : 경사지붕 8.1m, 평지붕 7.5m	
		· 정화조 : 현수미생물접촉방식 40톤×2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 지하수 : 생활용수(음용) 60㎡/일		
		ㅇ 허가기간 : 2014.12.18 ~ 2016. 5. 31.		
		ㅇ 허가조건		
		- 터파기나 지형 변형시 동굴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할 것		
허가		- 특히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추작업시, 동굴이 발견될		
사항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추 작업시에는 반드시 관계		
변경		전문가가 입회하여 확인토록 할 것.		
허가		- 생활오폐수나 자동차 출입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지		
		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배수 및 처리시설		
		을 할 것.		
		<변경 허가사항>		
		ㅇ 사업내용 : 건물 11개동과 지하수 1공 설치		
		- 건축면적 : 857.94m² - 연면적 : 1,178.78m²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층수 : 지상 2층		
		- 건물높이 : 경사지붕 7.85m, 평지붕 6.3m		
		- 정화조 : 현수미생물접촉방식 55톤 * 1ea		
		- 지하수 : 생활용수(음용) 60m²/일		
		ㅇ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 변경 없음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